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1월 20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1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1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12년 2월 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선우근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5.23(법률 제10700호)로 「지방공무원법」 및 2011.11.1(대통령령 제23277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일부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사무 기능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순증인력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1) 안 제2조에서 마포구의 총 정원의 총수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하여 1,260명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9명이 증원됨에 따라 1,269명으로 책정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도 9명이 증원된 1,231명으로 책정함
- (2) 안 별표 1중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일반직 현행 76% 이상을 79% 이상으로 3%를 상향 조정하고, 기능·고용직 현행 22% 이내를 19% 이내로 3%를 하향 조정하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능직 30명을 감축하고 대신에 일반직 30명을 증원함
- (3) 안 별표1의 제3호에서 “2015년까지 일반직의 비율은 78%이상으로 기능·고용직의 비율은 20%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한다”라는 항목은 목표비율의 달성을 위해 삭제함
- (4) 안 별표 2중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중 8급은 현행 30.5% 이내를 31% 이내로 0.5% 상향조정하고, 7급은 현행 8.5% 이상을 8% 이상으로 0.5%를 하향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중 6급은 현행 3% 이내를 4% 이내로, 7급은 현행 17% 이내를 19% 이내로, 8급은 현행 35% 이내를 36%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9급은 현행 33% 이내를 31% 이내로, 10급은 현행 12% 이상을 10%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하위직급을 축소하고 상위직급을 증원하였음

(5) 안 별표 3중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30명이 전환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9급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977명에서 총 39명이 증원된 1,016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912명에서 총 39명이 증원된 951명으로 조정하였음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소외된 하위직급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별 확정·통보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순증인력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증원에 따른 인력예산도 국비 50%를 포함하여 전액 확보되어 있고, 기능직 30명이 동일직급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도 상호간 상계 조정함에 따라 인력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